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10. 19.(수) 09: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6 의결사항

가.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 - (2011-57-233)

-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디지털 전환 관련 증액 소요(중계 유선방송사 컨버터 지원)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11년도 하반기 자막고지 실시에 따라 자체 전환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한 중계 유선방송사에 대해 디지털컨버터 장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328백만원) 증액 편성 추진
 - ※ '11년말부터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선별적 타켓 자막고지로 인한 혼란 방지 및 도서·산간지역 시청자의 TV시청권 보호
 - ② 총 소요재원 328백만원은 2011년 여유자금 운용재원에서 충당토록 함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당초 (A) | 변경안 (B) | 증감 (B-A) | 주요 증액 내용 |
|------------------|--------|---------|----------|---------------------------|
|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 3,500 | 3,828 | 328 |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에 디지털 컨버터 지원 비용 |
| 여유자금 운용 | 42,569 | 42,241 | △328 | 사업비 증액분을 여유자금에서 충당 |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주)이노션 등 6개 법인 - (2011-57-234)

-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6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2개 허가신청 법인[(주)이노션, (주)케이엘넷]에 대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함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웹하드 사업자 등록제 관련 - (2011-57-235)

-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47차 위원회('11. 8. 18) 보고 후, 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특이사항 없었음

○ 주요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29조)

- 등록신청시 정관,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제2항 신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접수 후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함(제6항 신설)
-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기술적 조치계획,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별표로 규정(제8항 신설)

<등록요건 주요내용>

| | |
|-----------|--|
| 기술적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저작물 등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저작물 인식기술, 검색 및 송신제한, 경고문구 발송) - 또한, 이용자 정보(ID, 이메일 주소 등) 표시, 2년 이상 로그파일정보 저장 ○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포함) 유통방지 및 표시를 위한 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른 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제48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을 콘텐츠에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 인력 및 물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으로 저작권 보호·청소년보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겸임가능) ○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 저작물 유통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2인 이상을 배정하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 추가 |
| 재무건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자본금 3억원 이상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서비스 약관 제정 등 이용자보호계획 수립 |

㉡ 권한의 위임규정 (안 제65조제2호의2 신설)

- 웹하드/P2P 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변경등록, 폐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기 타

- 초기 등록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는 15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안 부칙 제2조)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개정안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 별지 서식을 추가

③ 향후 일정

- 법제처 심사 : '11년 10월
- 차관·국무회의 : '11년 11월

라.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57-236)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40차 위원회('11. 7. 17) 보고 후, 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① 보편적시청권 관련

- (정의 구체화) 정의에 '추가비용 부담 없이'를 추가하여, 기존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제2조)
- (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확인) 중계 가능 사업자의 사전 충족 요건을 정하고 신청한 사업자의 요건을 확인하여 고시(제76조의6, 제108조)
 - ※ 당초 입법예고안 중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조항은 KBS 및 SBS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확인 제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고,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을 통해서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
- (금지행위 상향입법·신설) 방송법 시행령의 금지행위(제60조의3)를 타법 선례에 맞춰 상향입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제76조의3)

<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 >

< 상향입법 조항 >

-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당초 입법예고안 중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료화면을 제공받는 대상을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와 IPTV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체화

< 신설 조항 >

-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없이 국민관심 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사전 확인된 방송사업자를 하나 이상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간주)
 - ※ 당초 입법예고안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개 조항을 1개 조항으로 합함(단서에 반영)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과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는 행위

②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관련

-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로 정의(제2조)

※ 당초 입법예고안 중 '외주제작사 정의 관련' 조항은 문화부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방송사가 외주 제작 계약을 통해 타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를 정의에 포함

- (간접광고 정의 개정)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광고'를 '상품, 서비스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로 개정하여 대상품목 명확화(제73조)
- (간접광고 허용주체 확대)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영업 허용(제73조)
- (분쟁조정)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제35조의3)
- (자료제출)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사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98조)
- (과징금 부과) 법 제33조의 심의규정 또는 제74조제2항의 협찬고지 규칙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제100조)

③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 (결격사유 근거 마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외국인, 미성년자 등) 마련(제13조)
- (허가유효기간 단일화) 허가 유효기간을 전파법령으로 일원화(제16조)

④ 향후 일정

- 법제처 심사 : '11년 10월 중
- 국회제출 : '11년 11월 중

마. 허가조건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담양케이블방송 등 4개 사업자 (2011-57-237~240)

-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과 사업 시작의 의무를 위반한 (주)담양케이블방송, (주)장성삼계케이블, 구례케이블티비시스템(주), 옥천광케이블네트워크(주)에 대해 원안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의거, '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을 개시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주)담양케이블방송 등 4개 사업자의 위반내용

- 해당 법인들은 허가조건상 사업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①허가조건(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4항)과 ②사업의 시작 의무(법 제15조)를 동시에 위반

② 시정명령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에 따라 '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을 개시할 것

바.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 (주)연기디지털네트워크, (주)의령네트워크
- (2011-57-241)

-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방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있던 중, 폐지 승인을 신청한 (주)연기디지털네트워크(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위반)과 기간통신사업을 먼저 폐지하고 사후에 폐지승인을 신청한 (주)의령네트워크(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위반)에 대해
- 가입전환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절히 수행(잔존가입자 0명)한 점과 사후 사업폐지 신청을 한 사실 및 동 폐지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가능성이 낮고, 통신시장에서 퇴출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제재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안대로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함

7.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10. 24(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0:35)